

# 드림파크문화재단 경영수지 분석 최종보고서

2020. 11. 9.



세무사 김정륜



# 제 출 문

드림파크문화재단 귀하

본 보고서를 2020. 08. 12 계약한 「드림파크문화재단 경영수지분석」 용역의 최종보고서로 제출합니다.

2020. 11. 09.

세무사 김 정륜 (인)



# 목 차

1. 개 요 -----	1p
2. 드림파크문화재단의 재정 현황과 분석	
1) 드림파크문화재단의 설립취지와 운영상황 -----	2p
2) 드림파크문화재단의 재정상황 -----	5p
3) 지자체 문화재단의 재정운영 현황 -----	9p
4) 지자체 문화재단의 재정상황에 대한 시사점 -----	17p
3. 고유목적사업비 및 재단운영비 현황	
1) 고유목적사업비 적정 규모 -----	20p
2) 재단운영비 적정 규모 -----	24p
4. 위·수탁 사업비 적정 규모와 정산 등 구조개선 필요성	
1) 적정 사업비 규모 추정을 위한 사례와 비교 -----	28p
2) 적정 위탁사업비 규모 -----	34p
3) 재단의 수익구조 개선 필요성 -----	37p
5. 향후 개선과제와 제언	
1) 재단의 정체성과 관련된 개선과제 -----	41p
2) 지역주민에 대한 공익적 활동 필요성 -----	42p
[참고자료 및 첨부 자료] -----	44p



## 1. 개 요

우리나라에서 지자체의 지역문화재단은 1997년 경기도 문화재단이 설립된 후 1998년 강릉에 첫 기초단체 지역문화재단이 설립되었고, 2019년 말에는 전국 17개 광역단체 중 16개 지자체가 광역문화재단을 설립하였으며 전국 226개 기초단체 중 87개 지자체가 기초지역문화재단을 설립하였습니다<sup>1)</sup>.

여기서, 지자체의 지역문화재단과 유사한 드림파크문화재단도 새로운 변화에 대응하면서 지역문화재단의 운영상의 문제를 재정적인 부분에서 분석하여 향후 드림파크문화재단의 지속성과 지역문화재단으로 역할을 확대할 가능성을 높일 방법을 찾고자 합니다.

또한, 유사한 공원의 운영사례와 기획재정부의 예규를 검토하여 드림파크문화재단의 적정 고유목적사업비와 재단운영비 규모 산정 및 이를 뒷받침할 위·수탁사업비와 규모에 대해 제시하고자 합니다.

드림파크문화재단이 현재까지 매립지공사와의 매년 위·수탁 사업 계약을 진행하면서 사업 규모의 변동성이 크고 이로 인한 재단운영비 지출에 많은 어려움이 있어, 이를 현실적으로 해결할 대안과 재단의 고유목적사업을 위한 지출을 현실화하여 지역사회에 기여하는 역할을 증대하여야 할 필요성이 제기되는 상황입니다.

이를 위해 최근 3개년의 재단의 재정상황을 점검하고, 타 시, 구의 문화재단의 재정운영상태를 비교하여 본 재단의 적정한 사업 규모와 정산의 구조개선에 대한 필요성을 제기하고, 이를 근거로 위·수탁 계약에 대한 현실적인 대안을 제시하고자 합니다.

참고로 지자체 문화재단은 최소한 3개년 이상 실적이 있고 국세청 공익법인 공시에 자료를 공시한 지자체를 대상으로 하였으며, 그 외 필요한 관련 논문 등의 자료를 참고하였습니다.

---

1) 지역문화재단 운영의 쟁점 및 과제/배관표/국회입법조사처/2019.12.31.

## 2. 드림파크문화재단의 재정 현황과 분석

### 1) 드림파크문화재단의 설립취지와 운영방향

#### ① 법적 설립근거와 주요업무 및 한계

재단은 수도권폐기물 적정처리(위생매립, 자원화) 이외 매립지의 공원화 정책(드림파크 조성·운영)의 효율적인 추진체계 구축을 위해 환경부·매립지공사·주민대표 등이 공동참여하고, 환경부 장관과 국회에 설립계획을 보고한 후 일반 비영리법인에게 적용되는 허가와 달리 **환경부 승인 및 민법에 따라 공적 기관으로 설립**되었습니다.

따라서, **재단의 주요업무**는

첫째, 수목·조경 등 공원화 업무 및 이를 통한 지역 일자리 창출 등 지역 경제 활성화

둘째, 지역주민과 환경종사자 상생을 위한 복지·문화진흥 사업을 수행하는 것입니다.

이러한 업무를 바탕으로 설립된 드림파크문화재단은 목적사업 재원마련을 위해 매립지공사와의 위·수탁 업무를 통한 매립지의 공원화 사업과 지역 일자리 창출 등의 업무에 더 큰 비중을 두고 사업을 진행하여 온 것이 사실입니다.

일반적으로 문화재단이란 지역사회의 문화증진을 위한 문화예술인들에 대한 지원과 지역사회의 다양한 구성원들에게 문화예술 활동과 체험 등의 기회를 제공하는 전문적이고 책임 있는 활동을 하게 되어 있는바, 현재 문화재단은 매립지공사와의 위·수탁 사업을 통한 수수료 등 일부 수익을 재원으로 나름대로 의미있게 목적사업을 수행하고 있습니다.

앞으로 문화재단은 문화 분야의 사업을 늘려나가야 할 것이며 재단법인의 설립취지와 지역문화재단의 특색을 살려 기초단체의 문화재단과 차별화된 운영을 유지해야 할 필요도 있습니다.

다만, 문화재단의 특성을 갖추고 운영하기 위해서는 재정 건전성이 담보되어야 하며 이를 위한 다양한 시도와 노력이 필요한 시점으로, 재단의 한계와 문제점을 인식하고 이를 극복하기 위한 준비가 필요합니다.



## ② 현재 운영 및 향후 추진 방향

매립지공사와의 위·수탁사업을 배경으로 기본재산 약 6억 원과 보통재산 약 19억 원으로 운영 중인 재단은 ‘녹색 숲 조성관리’와 ‘제2 매립장 수림대 조성사업’, ‘문화행사’와 ‘시민문화교실 운영관리’ 등 외에 추가로 ‘골프장 수목유지관리’, ‘골프장 조경사업(보완식재)’, ‘드림파크 CC 코스관리’, ‘드림파크CC 코스보완’ 등의 사업을 구체적으로 진행하여 왔습니다.

또한, 지역사회를 위한 목적사업으로 다양한 복지사업과 문화진흥사업을 맞춤형으로 추진하고 있습니다.

이러한 위·수탁사업을 진행하면서 얻은 기술과 경험의 축적은 향후 지역 경제를 위한 사업에 기초를 이룰 수 있을 것이며, 문화증진 사업을 위해서는 매립지를 이용한 다양한 문화체험과 지역사회의 문화적 욕구를 수용하는 콘텐츠를 개발하는 등의 노력이 필요합니다.

이는 다른 지역문화재단의 활동 및 이를 분석한 자료 등을 통해 문화재단의 전문성과 책임성을 높일 수 있는 자율적인 재정원칙과 집행을 실현할 수 있는 구조를 만들어야 함을 의미합니다.<sup>2)</sup>

---

2) 지역문화재단의 역할과 과제/이현식/황해문화49/2005.12/새얼문화재단

### ③ 드림파크문화재단의 기본사항

구 분	상세 내용	비 고
설립시기	2007-02-23	업무개시 : 2009-02-04
설립근거	민법 및 매립지공사법 (제19조 3항)	
공익사업유형	문 화	
설립주체	매립지공사, 주민대표, 환경부	
이사 수	7명	매립지공사(1), 주민대표(2), 환경부(2), 공익이사(2)
고용직원 수	52명	※ 고유목적사업 전담 1명 포함
적용회계기준	기업회계기준	2020년분부터 공익법인회계기준 적용
외부감사 여부	부	2020년분부터 외부감사 적용
기부금 단체 유형	지정기부금단체	
기본자산(백만원)	640	

## 2) 드림파크문화재단의 재정상황

### ① 재무상태표<sup>3)</sup>

(단위:천원)

과 목	2017년(제11기)		2018년(제12기)		2019년(제13기)	
	금 액	증감	금 액	증감	금 액	증감
<b>자 산</b>						
1. 유동자산	3,019,837		2,820,312	△7.1%	3,449,269	18.2%
당좌자산	3,019,837		2,820,312	△7.1%	3,449,269	18.2%
- 현금등	2,335,398		1,333,052		2,751,512	
- 단기투자자산	640,700		640,700		640,700	
- 미수수익 등	7,002		809,558		7,838	
- 선급금 등	36,736		37,002		48,219	
2. 비유동자산	1,033,268		1,320,981	21.8%	1,458,199	9.4%
투자자산	937,956		1,181,631	20.6%	1,241,808	4.8%
- 퇴직연금	937,956		1,181,631		1,241,808	
유형자산	95,312		139,350	31.6%	89,133	△56.9%
- 기계장치 등	595,026		561,882		565,829	
(감가상각누계)	(499,714)		(422,532)		(476,696)	
기타비유동자산				-	127,258	100%
- 하자보수보증금					127,258	
<b>자 산 총 계</b>	<b>4,053,105</b>		<b>4,141,293</b>	<b>2.1%</b>	<b>4,907,468</b>	<b>15.6%</b>
<b>부 채</b>						
1. 유동부채	605,426		772,172	21.6%	1,002,177	22.9%
- 미지급금	245,520		293,512		150,016	
- 예수금등	294,347		309,954		139,272	
- 미지급금등	10,522		1,782		77,780	
- 고유목적 사업준비금	50,000		156,278		618,845	
- 보증금예수	5,037		10,646		16,264	
2. 비유동부채	931,558		1,154,919	19.3%	1,241,808	7%
- 퇴직급여 충당부채	931,558		1,154,919		1,241,808	
<b>부 채 총 계</b>	<b>1,536,984</b>		<b>1,927,091</b>	<b>20.2%</b>	<b>2,243,985</b>	<b>14.1%</b>
<b>자 본</b>						
1. 자본금	640,700		640,700	-	640,700	-
- 기본재산	640,700		640,700		640,700	
2. 자본잉여금						
3. 자본조정						
4. 기타포괄손익누 계						
5. 이익잉여금	1,875,421		1,573,502	△19.2%	2,022,783	22.2%
-미처분이익잉여금	1,875,421		1,573,502		2,022,783	
<b>자 본 총 계</b>	<b>2,516,121</b>		<b>2,214,202</b>	<b>△13.6%</b>	<b>2,663,483</b>	<b>16.8%</b>
<b>부채와 자본 총 계</b>	<b>4,053,105</b>		<b>4,141,293</b>	<b>2.1%</b>	<b>4,907,468</b>	<b>15.6%</b>

3) 드림파크문화재단 결산서 2017년~2019년 자료이며 공시목적으로 작성된 것임 / 천원단위로 인한 오차 있음

② 운영성과표4) (손익계산서)

(단위:천원)

과목	2017년		2018년		2019년	
	통 합	증감(%)	통 합	증감(%)	통 합	증감(%)
<b>I.사업수입</b>	9,472,949		9,473,849	0.01 %	11,126,973	14.9 %
1.출연금						
2.수탁사업	9,435,609		9,431,636	△0.04%	11,031,781	14.5%
3.기부금	22,273		21,977	△1%	0	-
4.금융수익	15,067		20,236	25.5%	38,260	47.1%
5.사업운용수익						
6.기타	0		0	-	56,930	100%
<b>II.사업비용</b>	9,094,442		9,721,076	6.4 %	10,134,369	4.1 %
<b>1. 목적사업 수행비용</b>	60,871		31,210	△95%	125,998	75.2%
-분배비용	60,871		31,210		125,998	
-인력비용	0		0		0	
-시설비용	0		0		0	
-기타비용	0		0		0	
<b>2. 목적사업 관리비용</b>	0		0		0	
-인력비용	0		0		0	
-시설비용	0		0		0	
-기타비용	0		0		0	
<b>3.목적사업 모금비용</b>	0		0		0	
-인력비용	0		0		0	
-시설비용	0		0		0	
-기타비용	0		0		0	
<b>4. 기타사업 비용</b>	9,033,571		9,689,865	6.8%	10,008,371	3.2%
-인력비용	5,495,747		5,662,442		5,956,576	
-시설비용	848,199		362,470		573,731	
-기타비용	2,689,625		3,664,953		3,478,064	
<b>III.사업이익</b>	378,507		-247,226	적자전환	992,603	흑자전환
<b>IV.사업외 수익</b>	220,691		57,081	△286%	74,108	22.9%
- 기타이익	220,691		57,081		74,108	
<b>V.사업외 비용</b>	112,437		21,679	△418%	769	△2,719%
- 기타비용	112,437		21,679		769	
<b>VI.고유목적사업 준비금전입</b>	0		0		650,000	
<b>VII.법인세차감 전 당기순이익</b>	486,761		-211,833	적자전환	415,942	흑자전환
<b>VIII.법인세</b>	69,797		0		54,051	
<b>IX.당기순이익</b>	416,964		-211,833	적자전환	361,891	흑자전환

### ③ 재무제표의 분석

#### i) 재무상태표 내용

자산은 최근 3년간 꾸준히 증가하는 추세이며 2018년은 예외로 보면 2017년, 2019년 모두 20억 원 수준입니다.

부채는 ‘고유목적사업준비금’의 금액에 따라 증감이 달라지지만, ‘고유목적사업준비금’의 특성상 법인세를 절감하는 목적이므로 크게 문제없어 보입니다.

따라서, 최근 3년간의 변화는 예외적인 2018년을 제외하면 자산의 지속적인 증가추세이나, 순재산 26억 원 중 퇴직급여충당부채 등 부채를 제외하면 가용한 순재산은 4억 원에 불과하여 자본축적에 많은 한계가 있어 보입니다.

아울러 재무상태표는 일면 건전해 보이지만, 실질적인 현금흐름이나 목적사업의 지출을 보면 거의 여유가 없는 상태로 매년 수수료수익으로 겨우 재단운영비를 감당하고 목적사업의 지출에는 전체적인 사업 규모에 비해 미미한 수준인 이유입니다.

#### ii) 운영성과표(손익계산서) 내용

위·수탁사업을 통한 수수료 수입이 일정수준 있지만, 목적사업인 문화사업은 거의 지출이 미약하며 이는 드림파크문화재단의 근본적인 문제로 보입니다.

‘사업수입금액’ 대비 ‘법인세 차감 전 당기순이익’의 비율은 약 5%대 초반에서 3% 후반으로 나타나고 수수료 수입이 10%로 일정하다는 것을 보면 운영비에 약 5% 정도의 비용이 소모되는 것을 추정할 수 있습니다.

4) 드림파크문화재단 결산서 2017년~2019년 자료이며 공시 목적으로 작성된 것임 / 천원단위로 인한 오차 있음

### iii) 재무분석

구 분	2017년(제11기)	2018년(제12기)	2019년(제13기)
총자산증가율 [(기말자산-기초자산)/기초자산 × 100%]	27.64% (4,053,105-3,175,517) / 3,175,517 × 100%	2.18% (4,141,293-4,053,105) / 4,053,105 × 100%	18.50% (4,907,468-4,141,293) / 4,141,293 × 100%
매출액 증가율 [(당기매출액-전기매출액)/전기매출액 × 100%]	6.79% (9,450,675-8,849,503) / 8,849,503 × 100%	0.25% (9,473,849-9,450,675) / 9,450,675 × 100%	17.45% (11,126,973-9,473,849) / 9,473,849 × 100%
법인세차감전당기순이익/사업수입금액 × 100%	5.14%	- 2.24%	3.74%
사업수행비용/사업수입금액 × 100%	96.00% 9,094,442/ 9,472,949 × 100%	102.6% 9,721,076/9,473,849 × 100%	97.08% 10,134,369/11,126,973 × 100%

총자산의 증가율은 사업의 규모와 정산과정 등을 거치면서 불규칙적인 면을 보입니다.

매출액 증가율은 사업 규모를 결정하는 것으로 매립지공사와 계약에 대부분을 의존하는 상황에서 드림파크CC의 비중이 증가하고 있습니다.

법인세 차감 전 당기순이익의 사업수익에 관한 비율은 재무분석 중 비교적 유의미한 내용을 보이며 실제 사업을 얼마나 잘 수행했는지 보여주는 것으로 광역자치단체 문화재단의 수익률과 유사한 모습을 보입니다.

그리고 사업수행비용대비 사업수입금액은 계약된 사업을 얼마나 잘 수행했는지를 보여주는 것으로 96~97%의 사업수행 비율을 나타내고 있습니다.

### 3) 지자체 문화재단의 재정운영 현황

#### i -1) 광역단체 문화재단의 재정현황<sup>5)</sup>

구 분	서울문화재단	인천문화재단	경기문화재단	부산문화재단
설립시기	2004-03-15	2004-12-10	1997-07-03	2009-01-14
설립근거	민법, 서울시 조례	민법, 문화예술진흥법	민법, 경기도 조례	민법, 부산시 조례
공익사업유형	문 화	문 화	문 화	문 화
설립주체	지자체	지자체	지자체	지자체
이사 수	13명	15명	20명	15명
고용직원 수 (목적사업)	248명	74명	179명	63명
적용회계기준	공익법인회계기준	공익법인회계기준	공익법인회계기준	공익법인회계기준
외부감사 여부	외부감사 적용	외부감사 적용	외부감사 적용	외부감사 적용
기부금 단체 유형	지정기부금 단체	지정기부금 단체	지정기부금 단체	지정기부금 단체
기본 자산(천원)	77,271,688	64,036,749	122,009,408	34,778
보통 자산(천원)	30,643,849	4,856,864	14,183,565	681,485
목적사업비(천원) <sup>6)</sup>	87,222,780	19,979,955	45,144,441	27,917,070
기부금 수익(천원)	1,349,524	114,215	290,044	384,000
보조금 수익(천원)	50,057,000	17,434,186	38,359,800	26,831,418
기타공익목적사업 수익(천원)	34,502,580	6,013,375	8,722,001	4,324,327

광역단체 문화재단의 경우 규모에 비례하여 기본재산과 보통재산이 상당한 상태이고 이를 통한 기본적인 재정이 비교적 안정적으로 보입니다.

다만, 지정기부금 단체로 지정된 상태이지만 기부금수익이 목적사업비의 지출에 비해 0.5%에서 1.5% 정도이며 대부분 사업을 보조금이나 위탁사업에 의존하는 것으로 재정상태가 외부의 환경에 쉽게 좌우될 여지가 많은 것이 사실입니다.

5) 국세청 공익법인 공시자료를 정리한 내용임

6) 공익목적사업비 지출 중 '공익목적사업 수행지출'만 기재하며 기초자치단체의 경우도 동일하게 기재함

목적사업의 수행지출과 일반관리비, 모금비용의 지출을 살펴보면 상당한 고정비가 발생하는 구조임을 알 수 있어 이에 대한 문제점이 제기되어 재정의 자율성<sup>7)</sup>이 침해된다는 의견이 나오고 있는 상황입니다.

i -2) 기초단체 문화재단 재정현황<sup>8)</sup>

구 분	인천시 서구 문화재단	인천시 부평 문화재단	서울시 구로 문화재단	경기도 군포 문화재단	대구시 동구 문화재단
설립시기	2017-10-27	2006-12-04	2007-07-24	2013-01-04	2013-06-25
설립근거	민법, 문화체육관광부 규칙	민법, 문화예술진흥법	민법	민법, 문화예술진흥법	민법, 문화체육관광부 규칙
공익사업유형	문화	문화	문화	문화	문화
설립주체	지자체	지자체	지자체	지자체	지자체
이사 수	11명	9명	12명	13명	16명
고용직원 수 (목적사업)	41명	134명	65명	164명	92명
적용회계기준	공익법인회계기준	공익법인회계기준	표시 없음	표시 없음	표시 없음
외부감사여부	여	여	여	여	여
기부금단체 유형	기타	지정기부금 단체	지정기부금 단체	지정기부금 단체	지정기부금 단체
기본 자산(천원)	10,000	10,000	10,000	10,000	1,053,000
보통 자산(천원)	1,586,270	2,840,928	713,197	0	2,652,974
목적사업비(천원)	3,412,830	8,104,214	2,282,678	8,287,793	5,902,359
기부금수익(천원)	0	32,967	103,417	36,371	37
보조금수익(천원)	6,505,889	13,317,178	4,531,282	15,509,798	5,259,756
기타공익목적 수익(천원)	146,674	299,966	740,737	3,974,631	2,625,167

광역단체의 문화재단에 비해 기본재산과 보통재산의 차이가 상당히 발생하고, 기본재산의 경우 대구시 동구를 제외한 다른 기초단체의 경우 1천만원이라는 상징적인 금액으로 나타나며, 일반적인 기초단체의 열악한 재정

7) 지역문화재단 운영의 쟁점 및 과제/배관표/국회입법조사처/2019.12.31.

8) 국세청 공익법인 공시자료를 정리한 내용임



상황을 고려하면 재정 운용의 융통성을 위해 적은 금액이 일면 타당해 보이며, 광역단체 문화재단과 비슷하게 기부금수익이 목적사업 수행비용에 비해 미미한 수준으로 나타나는 것은 역시 보조금에 의존하는 지자체 문화재단의 재정상태를 보여주는 것입니다.

ii -1) 2019년 광역단체 문화재단의 공익사업별 실적

(단위:천원)

구 분	서울문화재단	인천문화재단	경기문화재단	부산문화재단
<b>I. 수 익</b>				
기부금	1,349,524	114,215	290,044	263,209
보조금	50,057,000	17,434,186	38,359,800	23,762,993
회 비	0	0	0	0
기타공익목적수익	34,502,580	6,013,375	8,722,001	0
사업외수익	47,048	56,850	514,090	391,255
준비금 환입	962,070	1,263,083	0	0
<b>총 계</b>	<b>86,918,222</b>	<b>24,881,709</b>	<b>47,885,935</b>	<b>24,417,457</b>
<b>II. 비 용</b>				
공익사업 수행비용	79,660,868	19,979,955	40,142,422	22,185,494
<b>일반 관리비용<sup>9)</sup></b>	<b>6,413,197</b>	<b>2,455,805</b>	<b>4,914,037</b>	<b>2,283,482</b>
모금비용	186,516	158,260	0	0
공익사업 기타비용	0	0	813,603	24,915
사업외 비용	129	28,500	87,982	38
준비금 전입액	962,070	1,263,083	0	0
<b>총 계</b>	<b>87,222,780</b>	<b>23,855,603</b>	<b>45,958,044</b>	<b>24,493,929</b>

광역단체 문화재단의 경우 보조금 수입이 58%(서울), 70%(인천), 80%(경기), 97%(부산) 나타나는 상황에서 서울을 제외한 다른 지역의 경우 70% 이상의 지원을 받는 현실임이 나타납니다.

또한, 7.3%(서울), 10%(인천), 10.6%(경기), 9.3%(부산)에서 나타나는 것처럼 지출비용 중에서 ‘일반관리비용’의 비중이 (서울을 제외하면)평균적으로 10% 수준임을 보여 이는 목적사업의 수행을 위해서 일반관리비의 지출이 일정 규모로 필요함을 나타나 보입니다.

9) 드림파크문화재단의 ‘재단운영비’와 유사합니다.

ii -2) 2019년 기초단체 문화재단의 공익사업별 실적

(단위:천원)

구 분	인천시 서구 문화재단	인천시 부평 문화재단	서울시 구로 문화재단	경기도 군포 문화재단	대구시 동구 문화재단
<b>I. 수 익</b>					
기부금	0	32,967	103,417	36,372	37
보조금	6,505,890	13,317,178	4,531,283	15,509,798	5,259,757
회 비	0	0	0	8,265	0
기타공익 목적수익	146,674	299,967	740,737	3,974,631	2,719,545
사업외수익	29,737	166,015	12,240	126,811	85,034
준비금 환입	0	0	0	0	0
<b>총 계</b>	<b>6,682,301</b>	<b>13,816,127</b>	<b>5,387,677</b>	<b>19,655,877</b>	<b>8,064,373</b>
<b>II. 비 용</b>					
공익사업 수행비용	3,412,830	8,104,214	2,282,678	8,287,794	5,902,359
일반관리 <sup>10)</sup> 비용	2,535,433	5,312,312	3,000,254	10,781,695	1,194,079
모금비용	0	47,259	0	0	0
공익사업 기타비용	0	0	0	550,017	0
사업외 비용	0	2,123	34	36,371	0
준비금전입액	0	0	0	0	0
<b>총 계</b>	<b>5,948,263</b>	<b>13,465,908</b>	<b>5,282,966</b>	<b>19,655,877</b>	<b>7,096,438</b>

기초단체 문화재단의 경우 광역단체와 비슷한 모습을 보입니다.

다만, 인천지역의 기초단체 문화재단과 수도권 다른 기초단체의 차이는 보조금의 의존비율이 차이가 나며 이는 위·수탁사업이 존재하는 곳과 그렇지 않은 경우의 차이가 존재하는 것으로 보입니다.

또한, 기초단체 문화재단의 ‘일반관리비용’의 경우 42.3%(서구), 39.5%(부평구), 57.6%(구로), 54.85%(군포), 15.7%(대구 동구)를 보면 단순평균으로 약 42% 정도로 보이며, 이는 광역단체 문화재단보다 일반관리비 비중이 상당히 높다는 것을 보여줍니다.

10) 드림파크문화재단의 ‘재단운영비’와 유사합니다.

iii-1) 2019년 광역단체 문화재단 재무상태표

(단위:천원)

구 분	서울문화재단	인천문화재단	경기문화재단	부산문화재단
<b>자 산</b>				
1. 유동자산	30,861,127	28,974,300	53,647,279	38,645,394
당좌자산	30,861,127	28,974,300	53,113,846	38,645,394
- 현금등	5,865,298	3,006,318	21,680,244	5,257,244
- 단기투자자산	24,381,356	25,726,334	3,315,000	33,251,207
- 미수수익 등	422,662	15,427	845,900	21,767
- 선급금 등	191,810	226,220	678,267	115,176
- 기금예치금			26,594,435	
재고자산	0	0	533,433	0
- 저장품 등			533,433	
2. 비유동자산	82,941,751	41,133,113	101,460,245	1,552,820
투자자산	17,149,902	28,291,000	78,634,818	1,532,830
- 퇴직연금	0	0	0	0
- 금융상품 등	17,149,902	28,291,000	116,480	1,532,830
- 기금예치금			78,518,338	0
유형자산	64,552,236	12,640,734	22,620,539	12,601
- 기계장치 등	67,723,652	13,606,087	28,075,945	509,907
(감가상각누계)	(3,171,416)	(965,353)	(14,810,689)	(497,306)
- 기타유형자산			9,355,283	0
무형자산	1,074,918	158,687	0	7,390
- 소프트웨어	1,074,918	158,687	0	7,390
기타비유동자산	164,694	42,692	204,888	0
- 하자보수보증금등	164,694	42,692	204,888	0
<b>자 산 총 계</b>	<b>113,802,879</b>	<b>70,107,415</b>	<b>155,107,524</b>	<b>40,198,215</b>
<b>부 채</b>				
1. 유동부채	984,520	1,213,801	8,794,150	4,519,881
- 미지급금	80,215	1,089,257	626,212	281,702
- 예수금 등	904,305	124,544	2,095,246	2,185,079
- 선수금 등			5,458,291	2,053,100
- 고유목적사업준비금				
- 총당부채			614,401	
2. 비유동부채	4,902,820	0	10,106,120	212,811
- 퇴직급여총당부채 등	4,902,820	0	6,035,345	1,061,638
- 퇴직급여총당자산				(848,827)
- 임대보증금 등			4,070,774	
<b>부 채 총 계</b>	<b>5,887,340</b>	<b>1,213,801</b>	<b>18,900,270</b>	<b>4,732,692</b>
<b>자 본</b>				
1. 순자산	77,271,688	64,036,749	122,009,408	34,778,416
- 기본재산	77,271,688	64,036,749	122,009,408	34,350,000
- 원금보전기본금				428,416
2. 보통순자산	30,643,849	4,856,864	14,183,566	681,486
- 미처분이익잉여금	30,643,849	4,856,864	14,183,566	681,486
-				
3. 순자산 조정	0	0	14,280	5,621
- 평가이익(손실)			14,280	5,621
<b>자본(순자산) 총 계</b>	<b>107,915,538</b>	<b>68,893,613</b>	<b>136,207,254</b>	<b>35,465,523</b>
<b>부채와 자본 총 계</b>	<b>113,802,879</b>	<b>70,107,415</b>	<b>155,107,524</b>	<b>40,198,215</b>

iii -2) 2019년 기초단체 문화재단 재무상태표

(단위:천원)

구 분	인천시 서구 문화재단	인천시 부평 문화재단	서울시 구로 문화재단	경기도 군포 문화재단	대구시 동구 문화재단
<b>자 산</b>					
1. 유동자산	1,446,118	1,346,046	946,542	2,135,746	3,796,411
당좌자산	1,446,118	1,346,046	946,542	2,135,746	3,796,411
- 현금등	1,441,424	1,300,230	709,398	2,135,746	1,716,973
- 단기투자자산		10,000	210,000		2,053,000
- 미수수익 등	4,694	32,948	25,713		17,307
- 선급금 등		2,868	1,431		9,131
- 기금예치금					
재고자산	0	0	0	0	0
- 저장품 등					
2. 비유동자산	234,477	1,828,638	150,188		
투자자산	50,791	17,048	0	0	11,375
- 퇴직연금	50,791	17,048			
- 금융상품 등					11,375
- 기금예치금					
유형자산	169,899	1,787,337	147,014	46,147	0
- 기계장치 등	255,916	3,939,595	2,297,741	46,147	4,568,170
(감가상각누계)	(36,292)	(2,152,258)	(2,150,727)		(1,903,933)
(보조금)	(49,725)				(2,664,237)
무형자산	22,787	24,253	3,174	0	0
- 소프트웨어	22,787	24,253	3,174		44,026
(보조금)					(44,026)
기타비유동자산	0	0	0	391,896	0
- 하자보수보증금등				391,896	
<b>자 산 총 계</b>	<b>1,680,595</b>	<b>3,174,684</b>	<b>1,096,730</b>	<b>2,573,789</b>	<b>3,807,786</b>
<b>부 채</b>					
1. 유동부채	84,324	323,756	284,315	705,543	101,812
- 미지급금	50,411	285,609	31,553	705,543	14,388
- 예수금 등	9,025	38,147	31,831		48,070
- 선수금 등	24,888		220,931		28,571
- 고유목적사업준비금					
- 보증금					10,783
2. 비유동부채	0	0	0	0	0
- 퇴직급여충당부채 등	142,915	1,621,480	545,563		1,005,804
(퇴직연금운용자산)	(142,915)	(1,621,480)	(545,563)		(1,005,804)
- 임대보증금 등					
<b>부 채 총 계</b>	<b>84,324</b>	<b>323,756</b>	<b>284,315</b>	<b>705,543</b>	<b>101,812</b>
<b>자 본</b>					
1. 순자산	10,000	10,000	10,000	0	1,053,000
- 기본재산	10,000	10,000	10,000		1,053,000
2. 보통순자산	1,586,270	2,840,928	802,415	1,868,246	2,652,974
- 미처분이익잉여금	1,407,925	2,840,928	802,415	1,868,246	2,652,974
-고유목적사업준비금	178,345				
<b>자본(순자산) 총 계</b>	<b>1,596,270</b>	<b>2,850,928</b>	<b>812,415</b>	<b>1,868,246</b>	<b>3,705,974</b>
<b>부채와 자본 총 계</b>	<b>1,680,595</b>	<b>3,174,684</b>	<b>1,096,730</b>	<b>2,573,789</b>	<b>3,807,786</b>

iv -1) 2019년 광역단체 문화재단 운영성과표(손익계산서)

(단위:천원)

구 분	서울문화재단	인천문화재단	경기문화재단	부산문화재단
<b>I.사업수입</b>	<b>86,241,772</b>	<b>23,561,776</b>	<b>48,263,264</b>	<b>31,539,745</b>
1.출연금	50,057,000	17,434,186	38,359,800	26,831,418
2.수탁사업	32,985,126	4,694,701	0	0
3.기부금	1,349,524	114,215	290,045	384,000
4.금융수익	1,139,374	1,314,806	3,845,707	0
5.사업운용수익	710,748	0	0	4,324,327
6.기타	0	3,868	5,767,712	0
<b>II.사업비용</b>	<b>86,260,581</b>	<b>22,594,020</b>	<b>45,870,062</b>	<b>30,518,026</b>
<b>1. 사업 수행 비용</b>	<b>79,660,868</b>	<b>19,979,955</b>	<b>40,142,422</b>	<b>27,917,070</b>
-분배비용	42,437,156	11,160,553	4,612,970	27,917,070
-인력비용	11,446,353	3,211,129	15,738,868	0
-시설비용	3,311,939	532,810	2,727,227	0
-기타비용	22,465,420	5,075,463	17,063,357	0
<b>2.관리비용<sup>1)</sup></b>	<b>6,413,197</b>	<b>2,455,804</b>	<b>4,914,037</b>	<b>2,600,956</b>
-인력비용	3,634,449	1,689,919	3,434,417	2,268,138
-시설비용	993,159	73,466	559,231	13,479
-기타비용	1,785,589	692,419	920,389	319,339
<b>3.모금비용</b>	<b>186,516</b>	<b>158,260</b>	<b>0</b>	<b>0</b>
-인력비용	27,672	30,962		
-시설비용	0	0		
-기타비용	158,844	127,298		
<b>4. 기타 사업 비용</b>	<b>0</b>	<b>0</b>	<b>813,602</b>	<b>0</b>
-인력비용			211,678	0
-시설비용			185,584	0
-기타비용			416,340	0
<b>III. 사업이익 (손실)</b>	<b>- 18,808</b>	<b>967,756</b>	<b>2,393,201</b>	<b>1,021,719</b>
<b>IV.사업외수익</b>	<b>47,047</b>	<b>56,849</b>	<b>514,090</b>	<b>894,499</b>
- 기타이익	47,047	56,849	514,090	894,499
<b>V.사업외비용</b>	<b>129</b>	<b>28,500</b>	<b>87,982</b>	<b>2,030,224</b>
- 기타비용	129	28,500	87,982	2,030,224
<b>VI. 고유목적사업 준비금전입액</b>	<b>962,070</b>	<b>1,263,083</b>	<b>0</b>	<b>822,001</b>
<b>VII. 고유목적사업 준비금환입액</b>	<b>962,070</b>			<b>822,001</b>
<b>VII. 법인세차감전 당기순이익</b>	<b>28,109</b>	<b>996,106</b>	<b>2,819,309</b>	<b>- 114,006</b>
<b>VIII. 법인세</b>				
<b>IX. 당기순이익</b>	<b>28,109</b>	<b>996,106</b>	<b>2,819,309</b>	<b>- 114,006</b>

iv -2) 2019년 기초단체 문화재단 운영성과표(손익계산서)

(단위:천원)

구 분	인천시 서구 문화재단	인천시 부평 문화재단	서울시 구로 문화재단	경기도 군포 문화재단	대구시 동구 문화재단
<b>I.사업수입</b>	6,652,563	13,650,112	5,375,437	19,529,066	7,979,339
1.기부금	0	32,967	103,417	36,371	38
2.보조금	6,505,889	13,317,178	4,531,283	15,509,798	5,259,756
3.회 비	0	0	0	8,265	0
4.이자수익	0	0	22,004	0	0
5.매출액	146,674	299,967	0	0	0
6.기타		0	718,733	3,974,632	2,719,545
<b>II.사업비용</b>	5,948,264	13,463,785	5,282,932	19,619,505	7,096,438
1. 사업 수행 비용	3,412,830	8,104,214	1,887,201	8,287,793	5,902,359
-분배비용	0	0	0	0	1,289,260
-인력비용	352,705	4,473,205	44,594	0	2,482,737
-시설비용	478,258	422,738	76,444	0	337,730
-기타비용	2,581,867	3,208,272	1,766,163	8,287,793	1,792,632
2. 관리비용 <sup>12)</sup>	2,535,434	5,312,312	2,577,754	10,781,694	1,194,078
-인력비용	1,751,300	1,266,893	2,271,960	6,792,177	949,756
-시설비용	96,963	2,336,996	25,452	2,224,196	99,970
-기타비용	687,171	1,708,423	280,342	1,765,321	144,352
3.모금비용	0	47,259	0	0	0
-인력비용		46,445		0	
-시설비용		0		0	
-기타비용		814		0	
4. 기타 사업 비용	0	0	817,976	550,017	0
-인력비용			48,399	404,357	
-시설비용			162,133	145,660	
-기타비용			607,444	0	
<b>III.사업이익</b>	704,300	186,327	92,505	- 90,439	882,901
<b>IV.사업외수익</b>	29,737	166,014	12,240	126,810	85,034
- 기타이익	29,737	166,014	12,240	126,810	85,034
<b>V.사업외비용</b>	0	2,123	34	36,371	0
-기타비용	0	2,123	34	36,371	
<b>VI.고유목적 사업준비금전입</b>	0	0	0	0	0
<b>VII.법인세차감전 당기순이익</b>	734,037	350,218	104,711	0	967,935
<b>VIII.법인세</b>					
<b>IX.당기순이익</b>	734,037	350,218	104,711	0	967,935

11) 재단의 재단운영비와 유사합니다.

12) 재단의 재단운영비와 유사합니다.

#### 4) 지자체 문화재단의 재정 상황에 대한 시사점

##### ① 재무상태표의 분석 (2019년말 기준)

###### - 광역단체 문화재단의 경우

구 분	서울문화재단	인천문화재단	경기문화재단	부산문화재단
총자산증가율	- 1.40 %	1.52 %	5.08 %	- 0.43 %
수입금액 증가율	16.73 %	0.72 %	- 9.18 %	0.79 %

###### - 기초단체 문화재단의 경우

구 분	인천시 서구 문화재단	인천시 부평 문화재단	서울시 구로 문화재단	경기도 군포 문화재단	대구시 동구 문화재단
총자산증가율	91.59 %	9.67 %	14.47 %	36.88 %	32.81 %
수입금액 증가율	46.67 %	4.08 %	8.77 %	39.66 %	5.35 %

##### ② 운용성과표(손익계산서)에 대한 분석 (2019년말 기준)

###### - 광역단체 문화재단의 경우

구 분	서울문화재단	인천문화재단	경기문화재단	부산문화재단
사업수입 대비 사업비용	100.02 %	95.89 %	95.04 %	96.76 %
사업수입 대비 보조금	58.04 %	73.99 %	79.48 %	85.07 %
사업수입 대비 법인세차감전당기순이익	3.26 %	4.23 %	5.84 %	-
사업비용 대비 사업수행비용	92.35 %	88.43 %	87.51 %	9.15 %

###### - 기초단체 문화재단의 경우

구 분	인천시 서구 문화재단	인천시 부평 문화재단	서울시 구로 문화재단	경기도 군포 문화재단	대구시 동구 문화재단
사업수입 대비 사업비용	89.41 %	98.63 %	98.28 %	100.46 %	88.94 %
사업수입 대비 보조금	97.79 %	97.56 %	84.29 %	79.42 %	65.92 %
사업수입 대비 법인세차감전당기순이익	11.03 %	2.57 %	1.95 %	-	12.13 %
사업비용 대비 사업수행비용	57.37 %	60.19 %	35.72 %	42.24 %	83.17 %

### ③ 시사점과 비교

(단위:천원)

구분	직원 수	사업수입	법인세차감 전 당기순이익	총사업비용 중 관리비용 비율	직원 1인당 사업비용 규모	비고	
광역	서울문화재단	248명	86,241,772	28,109	7.48 %	347,824	광역단체는 관리비용 비율이 10%대, 1인당 사업규모는 약 3억원 정도임
	인천문화재단	74명	23,561,776	996,106	10.87 %	305,324	
	경기문화재단	179명	48,263,264	2,819,309	10.71 %	256,257	
	부산문화재단	63명	31,539,745	- 114,006	8.52 %	484,413	
기초	서구문화재단	41명	6,652,563	734,037	42.62 %	145,079	기초단체의 경우 시설관리에 많은 비중이 있어 관리비용이 높음
	부평문화재단	134명	13,650,112	350,218	39.46 %	100,476	
	구로문화재단	65명	5,375,437	104,711	48.79 %	81,275	
	군포문화재단	164명	19,529,066	74,490	54.95 %	119,631	
	대구동구 문화재단	92명	7,979,339	967,935	16.83 %	77,135	
드림파크문화재단	52명	11,126,973	415,942	14.83 % <sup>13)</sup>	194,891		

각 지자체 문화재단의 재무상태와 운영성과를 보면 각 문화재단의 특징적인 성격으로 일반화하기에는 오류의 가능성이 있지만, 다음의 내용을 참고하여 분석하고자 합니다.

2019년 지역문화재단의 연구조사 자료<sup>14)</sup>를 보면 1개 광역단체 문화재단은 평균 50개의 사업을 수행하며 기초단체 문화재단은 평균 33개의 사업을 수행하는 것으로 나타나며 드림파크문화재단은 15개 내외로 운영하고 있습니다.

광역단체 문화재단의 예산은 평균 321억 원이고, 기초단체 문화재단의 예산은 평균 105억 원이며(드림파크문화재단은 약 1.3억 원), 광역단체 문화재단의 평균 인력은 98명, 기초단체 문화재단의 목적사업 평균 인력은 57명(드림파크문화재단은 1명)으로 조사되었습니다.

재무상태표와 운영성과표(손익계산서)를 요약하고 특징적인 성격을 나타내

13) 2020년 예산에서 재단운영비에 포함되는 항목 '간접노무비와 사무국운영비 등'을 포함한 금액으로 16.5억을 대상으로함

14) 지역문화재단 운영의 쟁점 및 과제/배관표/2019.12.31./국회입법조사처



자면 다음과 같습니다.

재무상태표상의 특징은 유동비율과 당좌비율이 상당히 높아 안정적인 자금조달을 하는 것으로 보이며 부채비율이 낮은 이유도 동일한 과정에서 발생하는 것으로 판단됩니다.

다만, 일부 문화재단의 경우 총자산증가율과 매출액증가율이 불규칙한 모습이 보이는데 이는 사업의 연속성과 새로운 사업의 위·수탁 과정에서 일시적으로 발생하는 것으로 보입니다.

운영성과표상의 비용 중 다른 비용의 경우 너무 다양한 형태로 나오지만, ‘관리비용’의 경우 사업 규모에 따른 성격이 있어 비교의 대상이 될 것으로 판단하였습니다.

드림파크문화재단의 경우 조경과 같은 특수한 형태의 사업이 많아 다른 문화재단과 직접 비교하는 것이 어렵고 ‘관리비용’의 명목이 아닌 ‘기타사업비용’의 명목으로 보고하였으며 재단운영비의 명목으로 지출하는 부분을 분류하여 비교 목적상 나타낸 것입니다.

위의 표에서 ‘총사업비용 중 관리비 비율’과 ‘종업원 1인당 사업비용’은 총사업비용을 대상으로 한 것으로 ‘사업수입 금액’과는 차이가 있으며, 위의 내용을 보고 판단하면 재단의 위치는 기초단체 문화재단과 광역단체 문화재단의 중간적인 위치로 보입니다.

다만, 지자체의 문화재단이 수행하는 위·수탁계약에 의한 시설관리용역 계약은 정부조직법상 행정 권한의 위임에 의한 규정으로 사업을 진행하게 되며, 매립지공사와 국가계약법에 의한 도급계약을 하는 재단의 위·수탁 계약과는 차이가 존재하나 이러한 차이를 고려하더라도 시설물 관리와 지자체 문화재단의 재정운영상황을 참고하기에는 유사한 특성을 많이 공유하여 이에 대한 비교자료로 사용하고자 합니다.

### 3. 고유목적사업비 및 재단운영비 현황

매립지공사·재단 간 위·수탁사업비 산정의 근간이 된 공사 위촉 「드림파크 조성 관련 위탁사업」에 대한 예정원가조사보고서(2009.08.26./한국물가협회) 등에 따르면, “위탁 수수료는 재단 고유목적사업에 사용되어야 하며 도급으로 시행한 경우 별도로 일반관리비와 이윤을 추가로 발생시켜야 할 것으로 사료 된다”고 밝히고 있습니다.

#### 1) 고유목적사업비 적정 규모

##### ① 드림파크문화재단 2019년 말 기본사항

구 분	상세 내용	구 분	금 액
사업개시	2009-02-04	I. 수 익	
설립근거	민법	기부금	0
공익사업유형	문화	보조금	51,610
설립주체	기타	회 비	0
이사 수	7명	기타공익목적수익	21,082
고용직원 수(고유목적 전담 1명 포함)	52명	사업외수익	11,054,280
적용회계기준	기업회계기준	준비금 환입	0
외부감사 여부	부	총 계	11,126,973
기부금 단체 유형	지정기부금단체	II. 비 용	
기본 자산(천원)	640,700	공익사업 수행비용	124,081
보통 자산(천원)	1,917,211	일반 관리비용	0
목적사업비(천원) <sup>15)</sup>	124,081	모금비용	0
기부금 수익(천원)	0	공익사업 기타비용	10,010,288
보조금 수익(천원)	51,610	사업외 비용	769
기타공익목적사업 수익(천원)	21,082	준비금 전입액	0
		총 계	10,785,138

2019년 말 기본재산은 약 6.4억 원이고 보통자산은 약 19억 원 정도를 나

15) 공익목적사업비 지출 중 ‘공익목적사업 수행지출’만 기재하며 기초자치단체의 경우도 동일하게 기재함

타내며, 목적사업비로 약 1.2억 원을 지출하였으며 위·수탁사업 규모는 약 110억 원 규모이고 아직은 기업회계기준을 적용하고 있지만, 회계감사를 받게 되면 공익법인 회계기준을 적용하여야 합니다.

기부금수익은 없으며 이는 문화재단이 수도권매립지 관련 사업 만을 하여 일반 시민(단체)로부터의 기부금 수입은 한계가 있는 것으로 나타나며, 다만 지속적인 목적사업비의 지출을 유지하여야 할 것으로 보입니다.

## ② 고유목적사업준비금 지출 내용

기초단체 문화재단의 경우 위탁사업만을 진행하여 사업비 규모가 작지만, 광역자치단체의 문화재단은 다양한 활동을 통해 공익법인으로서 역할을 하고 있습니다.

드림파크문화재단도 문화활동과 직접 분배를 통해 지역주민 소외계층의 복지와 문화를 위한 활동을 진행하고 있는데 2009년부터 전입한 금액은 향후 5년 내 사용하여야 하며 이는 지속적인 법인세 절감 측면과 주민복지 및 문화증진을 위한 다양한 사업을 진행할 원동력이 될 것입니다.

2020년 추진을 계획한 사업은 지역공동체 복지사업 5건과 지역 문화 진흥사업 15건으로 2가지 부문의 총 20개 사업을 통해 약 1.3억 원의 예산을 사용할 계획입니다.

추후 지속적인 목적사업 발굴을 통해 지역공동체의 복지와 문화진흥이라는 목적에 맞는 사업추진으로 문화재단 고유의 목적과 법인세 감면이라는 효과를 얻게 됩니다.

다만, 고유목적사업준비금의 설정 후 5년 내 사용하지 못할 때 이에 대한 이자 성격의 불이익과 함께 법인세가 추가로 추징되므로 고유목적사업준비금의 설정과 사용에 주의를 기울여야 할 것입니다.

(단위:천원)

구 분	설정금액	사용금액		잔 액	비 고
		전기 설정액	당기 설정액		
2009년	150,000	0	0	150,000	
2010년	50,000	133,853	0	66,147	
2011년	0	55,072	0	11,075	
2012년	100,000	11,075	58,351	41,649	
2013년	0	41,649	[48,927]	0	추가설정으로 봄
2014년	0	0	[9,423]	0	추가설정으로 봄
2015년	130,000	0	5,000	66,650	2013년, 2014년 설정분 차감 후 잔액
2016년	100,000	31,640	0	135,010	
2017년	50,000	60,870	0	124,140	
2018년	0	31,210	0	92,930	
2019년	650,000 <sup>16)</sup>	92,930	31,151	618,849	
2020년(예정)	0	125,000	0	493,849	회계상 잔액이고
소 계	1,230,000	583,299	152,856		단수 차이 존재함

### ③ 고유목적사업준비금의 적정 규모

위와 같은 상황처럼 매년 일정 금액의 고유목적사업을 위한 노력이 필요하며 현재 상황에서는 평균적인 사업을 보면 대략 1억 원에서 1.5억 원 사이의 지출을 할 수 있는 고유목적사업준비금의 설정과 사용이 적절한 규모라 예상됩니다.

이를 위해서는 매년 일정 금액을 고유목적사업준비금으로 적립하여 법인세를 절감하여 이를 5년 내 사용할 수 있는 예산을 편성하고, 2021년부터는 ‘공익부문 자산의 1%’를 강제로 사용하는 ‘의무지출’ 규정이 상속·증여세법 시행령에 규정되어 더욱 공익법인의 의무를 강화하는 방향으로 법이 제정되어 공익법인의 역할을 강화하는 것이 타당합니다.

향후 수수료수익이 증가하고 이를 통해 고유목적사업준비금의 설정을 추가로 할 수 있다면 ‘공익목적 자산의 5%’ 정도를 고유목적사업준비금으

16) 회계상 고유목적사업준비금 금액으로 세법상 금액과 차이가 있으며, 설정 후 5년간 균등하게 사용해야 합니다.

로 설정하는 것이 법인세의 절감과 상속 증여세법상 공익법인의 적절한 설정 규모로써 의미가 있게 될 것입니다.

이러한 추정은 5년 동안 고유목적사업준비금을 사용하는 법 규정으로 인해 매년 1%씩을 의무적으로 사용하는 상황에서 1%의 5개년 사용액을 계산한 것입니다.

따라서, 자산 기준으로 사용액을 살펴보면 2019년 결산 시 공익목적 자산은 기본재산과 보통재산의 합계로 볼 때 약 25.5억 원이 되며, 이 금액의 5%라면 연간 약 1.3억 원이 됩니다.

또한, 그동안 적립한 고유목적사업준비금 「표」를 기준으로 산출한다면 적립액은 최대 6.5억 원이며 재단의 실질적인 법인세 절감과 연간 고유목적사업 적정규모는 1.3~1.5억원 입니다.

위 두 가지 중 자산 기준의 사용액 기준으로 할지와 적립을 기준으로 할지는 재정상황에 따라 선택할 수 있습니다.

최소 규모 기준으로 볼 때, 당기순이익 여부와 관계없이 자산의 1% 사용은 의무사항으로, 향후 공익법인의 지역 복지증진과 지역공동체의 활성화에 기여하는 최소한의 규모가 될 것입니다.

## 2) 재단운영비(관리비용) 적정 규모

### ① 재단운영비 산출을 위한 비교(2019년 기준)

(단위:천원)

구 분	직원 수	사업수입	법인세차감 전 당기순이익	총사업비용 중 관리비용 비율	직원 1인당 사업비용 규모	비 고	
광역	서울문화재단	248명	86,241,772	28,109	7.43 %	347,824	광역단체는 관리비용 비중이 약 10%임
	인천문화재단	74명	23,561,776	996,106	10.87 %	305,324	
	경기문화재단	179명	48,263,264	2,819,309	10.71 %	256,257	
	부산문화재단	63명	31,539,745	- 114,006	8.52 %	484,413	
기초	서구문화재단	41명	6,652,563	734,037	42.62 %	145,079	기초단체의 경우 시설관리에 많은 비중이 있어 관리비용이 높음
	부평문화재단	134명	13,650,112	350,218	39.46 %	100,476	
	구로문화재단	65명	5,375,437	104,711	48.79 %	81,275	
	군포문화재단	164명	19,529,066	74,490	54.95 %	119,631	
	대구 동구 문화재단	92명	7,979,339	967,935	16.83 %	77,135	
드림파크문화재단	52명	11,126,973	415,942	14.83 % <sup>17)</sup>	194,891	※ 2020 참조	

※ 2020년 예산서 기준 위·수탁 사업비 115억은 재단운영비(사무국 9명 인건비 외 기관운영비와 코스단 수수료에 의한 추가급여와 목적사업비 등)로 16억 원을 책정하였으며 이는 예산대비 약 14%의 비중으로 나타남.

위의 자료에서 총사업비용 중 관리비용의 비중을 보며 재단의 14.83%는 서울문화재단과 부산 문화재단을 포함한 광역단체 문화재단을 제외하면 가장 낮은 수치로 나타납니다.

시설관리가 대부분인 문화재단으로 보이는 기초단체의 문화재단은 평균 약 40.53%<sup>18)</sup> 정도의 관리비용을 지출하며, 일정 규모 이상을 운영하는 광역단체 문화재단의 경우 평균 약 9.38% 정도의 관리비용을 사용하는 것으로 나타납니다.

17) 2020년 예산에서 재단운영비에 포함되는 항목 '간접노무비와 사무국운영비 등'을 포함한 금액으로 16.5억을 대상으로 함

18) 대구 동구 문화재단을 포함한 평균으로 대구 동구 문화재단을 제외 시 46.45% 정도입니다.

또한, 1인당 사업비 규모는 기초단체 문화재단의 경우 평균 1인당 약 1억 원 정도이고 광역단체 문화재단의 경우 평균 1인당 약 3.48억 원 정도입니다.

재단의 1인당 사업비가 약 1.9억 원인 것을 고려하면 기초단체 문화재단과 광역단체 문화재단의 중간정도로, 재단운영비의 규모는 위·수탁사업비 대비 최소 14%에서 최대 20%(평균 17%) 수준이 적정해 보입니다.

이러한 관리비용은 대부분 인건비성 경비이거나 기관운영비용으로 재단의 경우도 이러한 재단운영비의 비율이 상당하지만, 사업비에 반영하지 못하는 부분이 있어 재단의 재정 운용에 많은 어려움을 겪고 있는 상황입니다.

앞으로 재단의 관리비용이 지속적인 증가가 예상되며 이유는 최저임금 상승과 주 52시간 근무의 강제와 물건비, 자본적 성격의 지출 등을 고려할 수 있으며, 현재 사업의 규모를 키우거나 이익을 증대시키는 경우 사업비 대비 재단운영비는 20% 정도(2020년 기준 약 23억 원) 수준이 되어야 안정화 될 것입니다.

최저임금 상승, 주 52시간 근무는 향후 인건비와 관련된 비용의 상승이 요구되며 이에 대해 물가상승분의 도급원가 인상이나 낙찰률 인상 또는 사업 규모를 증가시켜 실질적인 이익을 보장하는 등의 대책이 요구된다고 할 것입니다.

그외 수수료수익 10% 보장과 도급제로의 완전전환(운영관리 용역) 등도 고려할 수 있습니다.

물론 이는 매립지공사와의 협의가 필수적 입니다.

## ② 최근 4개년 위·수탁 사업 현황을 통한 운영비 분석

(단위:천원)

구 분	2016년	2017년	2018년	2019년
매출액	8,849,594	9,450,675	9,445,478	11,031,781
공사원가	6,794,348	7,696,740	8,018,573	8,359,610
매출총이익	2,055,154	1,753,935	1,426,904	2,672,171
재단운영비	1,304,044	1,397,700	1,675,310	1,650,678
- 인건비 <sup>19)</sup>	890,921	1,044,473	1,281,882	1,062,600
- 기타비용 <sup>20)</sup>	413,123	353,227	393,428	588,078
영업이익	751,100	356,234	- 248,405	1,021,493
영업외수익(+)	179,082	242,964	85,452	95,191
영업외비용(-)	135,166	112,437	32,687	650,769
법인세차감전 당기순이익	795,024	486,761	- 195,640	465,915

사업 규모가 증가하면서 도급원가도 증가하지만, 부수적으로 운영비도 함께 증가하는 것을 고려하면 재단운영비의 비중도 검토하여 이의 지출이 재정에 영향을 미치는 여부도 고려하여야 합니다.

(단위:천원)

구 분	2016년	2017년	2018년	2019년	비 고
매출총이익 (위탁사업이익)	2,055,154	1,753,935	1,426,904	2,672,171	4년 매출액 대비 평균: 20 %
재단운영비	1,304,044	1,397,700	1,675,310	1,650,678	
매출총이익 중 재단운영비 비중	63.45 %	79.69 %	117.41 %	61.77 %	4년 평균 : 80 % 2018년 제외시: 68 %
재단운영비 중 인건비의 비중	68.31 %	74.72 %	76.51 %	64.37 %	4년 평균 : 71 %

매출총이익에서 재단운영비의 비중이 평균적으로 2018년을 제외하면 68%를 보여주고 있습니다.

사업 규모가 2%씩 증가하고 이에 따른 도급원가도 약 1.69%씩(낙찰률 84.5% 기준) 증가하면서 재단운영비도 약 1.36%씩(68.30% 비중 기준) 증가한다면 이익의 상당 부분을 재단운영비로 지출하게 됩니다.

19) 손익계산서상의 급여, 수당, 퇴직급여, 복리후생비 포함

20) 손익계산서상의 판관비(재단운영비) 내용에서 인건비를 제외한 금액



낙찰률이 1% 하락한 상황에서 재단운영비의 보전이 없다면 재단운영비의 지출에 재정적인 어려움을 겪을 수밖에 없는 구조적인 문제가 발생합니다.

재단의 위탁사업에 대한 이익은 4년 평균적으로 약 20%로 나타납니다.

위 ‘①재단운영비 산출을 위한 비교’에서 지자체 문화재단의 일반관리비와 비교하면 향후 재단운영비가 약 20% 정도로 증가가 예상되고 현재 상황을 비교하면 인건비 부대비용, 간접노무비, 자본적 지출 성격 비용 등의 재단운영비 지출이 꾸준히 증가할 것이 충분히 예측 가능합니다

위탁사업 대비 재단운영비는 약 68%의 비중이고 이를 ‘총위탁사업비’의 비중으로 표현하면 약 16%를 차지하여 ‘영업외 수익과 비용’을 제외하고 ‘영업이익’을 ‘법인세 차감 전 수익’으로 보면<sup>21)</sup> 총위탁사업비의 4.68%가 됩니다.

총 위탁사업비의 4.68%로 법인세납부와 고유목적사업준비금 전입을 하여야 하는 상황입니다.

재단운영비 중 인건비의 비중이 평균적으로 71%이고 현재 재단의 인원 52명 중 9명이 경영지원부 소속으로 인건비를 재단운영비에서 지급하는 상황이며 그에 더하여 인건비성 부대 경비와 간접노무비, 물건비, 자본적 지출 성격의 비용들은 도급원가나 실비정산 원가에 포함되지 않아 재단운영비로 지출되어 재단의 재정에 상당한 압박이 됩니다.

결론적으로 재단운영비<sup>22)</sup>는 위·수탁 사업비 규모의 최소 14%에서 최대 20%(평균17%) 수준이 적정하다는 것입니다.

21) 영업외 수익, 비용은 각 년도 별로 일반화하기 어려워 이를 제거하고 영업이익을 법인세차감전이익으로 간주하고 위탁사업이익 20.2%를 재단운영비 15.52%와 법인세차감전수익 4.68%로 구분함

22) 사무국 9명 인건비성 경비 + 기관운영비 + 코스단 수수료에 의한 추가급여 등 경비 + 고유목적사업비 등

#### 4. 위·수탁 사업비 적정 규모와 정산 등 구조개선 필요성

##### 1) 적정사업비 규모 추정을 위한 사례와 비교

##### ① 지자체 문화재단의 규모와 사업비 비교(2019년)

(단위:천원)

구 분	총사업비 23)	목적사업비		위·수탁 사업비 및 재단운영비					
		분배비용	(%)	인력비용	(%)	시설비용	(%)	기타비용	(%)
서울문화재단	86,260,581	42,437,156	49.2%	15,108,474	17.5%	4,305,098	5%	24,409,853	28.3%
인천문화재단	22,594,020	11,160,553	49.4%	4,932,010	21.8%	606,276	2.7%	5,895,180	26.1%
경기문화재단	45,870,062	4,612,970	10.1%	19,384,963	42.3%	3,472,042	7.5%	18,400,086	40.1%
부산문화재단	30,518,026	27,917,070	91.5%	2,268,138	7.4%	13,479	0.1%	319,339	1%
서구문화재단	5,948,264	0	0	2,104,005	35.4%	575,221	9.7%	3,269,038	54.9%
부평문화재단	13,463,785	0	0	5,786,543	43%	2,759,734	20.5%	4,917,509	36.5%
구로문화재단	5,282,932	0	0	2,364,953	44.8%	264,029	5%	2,653,949	50.2%
군포문화재단	19,619,505	0	0	7,196,534	36.7%	2,369,856	12.1%	10,053,114	51.2%
대구 동구 문화재단	7,096,438	1,289,260	18.2%	3,432,493	48.3%	437,700	6.2%	1,936,984	27.3%
드림파크 문화재단	10,134,369	125,998	1.2%	5,956,576	58.8%	573,731	5.7%	3,478,064	34.3%

2019년 지역문화재단의 연구조사 자료<sup>24)</sup>를 보면 1개 광역단체 문화재단은 평균 50개의 사업을 수행하며 기초단체 문화재단은 평균 33개의 사업을 수행하는 것으로 나타납니다.

광역단체 문화재단의 예산은 평균 321억 원이고, 기초단체 문화재단의 예산은 평균 105억 원이며, 광역단체 문화재단의 평균 인력은 98명, 기초단체 문화재단의 평균 인력은 57명으로 조사되고 있습니다.

이에 비해 재단은 52명의 인원이 약 101억 원의 사업비를 사용하며 고유 목적사업비로 약 1.25억 원을 사용했고, 이는 사업비의 1.23%의 비중입니다.

그 외 나머지 비용은 위탁사업비용과 재단운영비로 사용된 것입니다.

23) 각 지자체 문화재단의 운영성과표상의 '사업비용'을 나타낸 것임

24) 지역문화재단 운영의 쟁점 및 과제/배관표/2019.12.31./국회입법조사처

재단의 재정상황을 지자체의 문화재단과 비교하면 기초단체의 문화재단은 시설관리에 중점을 두는 반면 광역단체의 문화재단은 직접적인 분배역할을 하는 것으로 보입니다.

광역단체의 문화재단은 10%에서 50% 내외의 분배비용을 나타내고 있습니다.<sup>25)</sup>

이는 상당한 규모이며 문화재단의 역할에 대한 대내외적인 의지를 표시한 것으로 판단합니다.

이러한 수치는 문화재단의 방향성을 나타내는 것으로 드림파크문화재단의 경우 위의 광역단체 문화재단처럼 분배비용을 사용하기에는 위탁사업의 비중이 크고 수수료수익이 아직 재단운영비를 확보하는 규모가 되지 않으며 목적도 동일하지 않아 기초단체 문화재단과 유사한 모습을 보입니다.

---

25) 부산문화재단의 경우 약 91%의 분배비용이나 지역의 특성상 예외적인 것으로 보입니다.

## ② 야생화단지의 유사공원 운영사례와 비교

야생화단지의 조성과 개방은 인천 서북부 도심 속 힐링과 환경 교육의 장을 마련하여 수도권 최고의 친환경 문화공원 조성을 목표로 하고 있습니다.

비록, 지금은 코로나 19로 인한 영향으로 위축된 모습이지만, 향후 도시공원의 역할을 고려하면 지속적인 확대가 요구될 것입니다.

한국조경학회지 2020년 6월에 발표된 ‘서울시 도시공원 조성예산 변동 추세<sup>26)</sup>’에 대한 내용을 보면 도심 공원에 대한 가치는 생태적 가치뿐 아니라 사회문화적 가치가 있는 중요한 시설이자 공간으로 변화하고 있으며 2020년 서울시민의 참여예산사업에서는 공원녹지 관련 사업이 건수 기준 12.7%, 금액 기준 27.7%로 증가하여 시민들의 요구가 증대되고 있으며, 이를 실질적으로 반영하기 위해서는 단기적인 성과를 위한 사업이 아닌 장기적인 관점에서 접근하여야 하므로 지속적인 예산확보를 위한 방법이 필요하다는 의견을 제시하고 있습니다.

특히 서울은 2018년 기준 전체 공원면적이 168.37km<sup>2</sup>로 행정구역 면적 605.2km<sup>2</sup> 대비 27.82%로 1인당 공원면적이 16.63m<sup>2</sup>입니다.

하지만, 공원녹지의 76% 이상이 서울 외곽지역에 편중되어 접근성 좋지 않아 생활 주변에서 시민들이 쉽게 접근할 수 있는 공원녹지가 부족하다고 분석하고 있습니다.

물론 서울의 경우 다양한 이해관계인이 있어 도심 속 공원을 조성하기에 어려운 문제들이 있습니다.

그러나 야생화단지의 경우 매립장의 문제와 도심 속 접근성이 좋은 장소를 이용하여 그러한 문제를 상쇄하는 효과를 낼 수 있는 도심 속 공원의 역할을 충분히 감당할 수 있을 것으로 기대하고 있습니다.

26) 한국조경학회지 48권 제3호 /고하정/(재)숲과나눔 박사후연구원/2020.06

이를 유사공원과 비교해보면 야생화단지 사업이 효율적인 관리를 하고 있으며 이와 같은 사업을 할 수 있는 능력과 경험을 보유하고 있음을 알 수 있습니다.

또한, 다른 유사공원들도 다른 일반 기업보다 목적에 맞게 운영할 수 있는 공익법인이나 공공기관이 관리하는 모습을 보이며, 이런 사업을 향후 확대하고 지속적인 관리를 하기 위해서는 예산편성이 장기적이고 목적 적합한 곳에서 관리하는 것이 타당합니다.

구 분		서울 식물원	서울숲	인천 대공원	대구 수목원	부산 시민공원	드림파크 야생화단지
면적(m <sup>2</sup> )		504,012	480,994	1,445,000	244,630	528,278	468,578
관리 인원	고정인원	76명	30명	92명	30명	30명	8명
	기간제	96명	60여 명	97명	90명	60명	25명
예산	년 예산	92.87억	42.67억	76.7억	67억	75억	19.27억
	운영비 (인건비)	80.61억 (공무원인건비제외)	28.86억	76.7억 (공무원인건비제외)	(16억) (공무원인건비제외)	60억 (공무원인건비 제외)	(2.56억)
비교	관리비(원/m <sup>2</sup> )	18,327	8,871	5,308	27,377	14,197	4,112
	면적 (m <sup>2</sup> /인)	2,930	5,344	7,645	2,718	5,869	14,199

재단의 위·수탁사업 중 하나인 ‘야생화단지 관리’의 경우 2019년 예산이 약 19억 원 정도이고 이를 다른 유사한 공원의 사례와 비교해도 면적 대비 관리 인원과 관리비의 비교를 통해 상당한 효율성을 나타냄을 알 수 있습니다.

이는 기존의 사업을 통해 공원의 조성 과 유지, 관리에 특화된 경험이 상당한 장점으로 작용함을 알 수 있습니다.

야생화단지 관리의 경우 대부분 면적이 실제 조성 과 관리의 대상이 되며 다른 도심 공원보다 조성 과 관리 대상 면적이 상당히 넓고 비용이 많이 소요되는 것으로 보임에도 불구하고 효율적인 측면에서 상당히 우수한 것이 나타납니다.

③ 기획재정부 예규와 비교에 따른 계약상 문제

(단위:천원)

구 분		도급정산(건설분야)	실비정산(운영분야)	비 고	
직접 공사비	직접재료비	428,517	843,298		
	직접노무비	2,951,881	2,628,569		
	경 비	172,724	862,865		
	소 계	3,553,122	4,334,734	62.5%	67.1%
간접 공사비	간접노무비	337,229	18,746		
	공적보험등	379,045	302,967		
	기타경비	379,422	268,959		
	소 계	1,095,696	590,672	19.3%	9.1%
순공사비 합계		4,648,818	4,925,406	81.8%	76.2%
일반 관리비		0	0		
이 운		0	0		
총 공급가액		4,648,818	4,925,406	82.4%	76.2%
위탁 수수료		467,998	492,521	8.2%	7.6%
총 공사비		5,116,816	5,417,928	90.6%	83.8%
폐기물/보험등		50,323	458,045		
부가가치세		516,212	587,597		
위탁 사업비		5,683,351	6,463,570		

※ 도급정산: 녹색숲사업, 제2매립장 수립대조성사업, 골프장수목관리사업, 골프장 조정사업, 골프장 코스 개선사업

※ 실비정산: 시민문화교실 운영관리, 야생화단지 개방, 드림파크문화행사, 간이체육시설 운영관리, 드림파크CC 코스관리

재단 도급공사의 경우 일반관리비의 보장이 기획재정부의 ‘계약예규에 의한 기준’ 에는 아직 미치지 않는 것으로 보입니다.

또한, ‘정부 입찰 계약 집행기준’ 의 제9조 계속 공사의 계약금액 결정에서는 단위 공사금액에 따라 낙찰률이 10억 미만은 87.75%, 50억 미만은 86.75%, 100억 미만은 85.75%로 나타나며 이는 2019년 하락한 낙찰률보다

최소 1% 이상 높은 것을 나타내고 있습니다.

그리고 일반관리비의 경우 ‘예정가격 작성기준’의 제20조 일반관리비의 내용을 보면 공사종류와 금액별로 5%에서 6% 사이를 정하고 있습니다.

또한, 제21조 이윤에서는 노무비, 경비, 일반관리비의 합계액에서 15%를 초과하지 못한다고 정하고 있습니다.

현재 계약은 이를 현실적으로 반영하지 못하고 있으며 이에 대한 보완으로 수수료수익에 의지하여 재단운영비를 감당하고 있는 것입니다.

비록, 매립지공사와의 여러 가지 계약과 관련된 복잡한 상황이 있음에도 기획재정부의 계약, 예규를 준수하지 않는 것은 재단의 재정상태를 악화시키고 단기적인 공사원가를 낮추는 효과밖에 없으며 이는 추후 장기적인 매립지의 공원화 사업에도 부정적인 영향을 줄 수밖에 없습니다.

재단운영비의 지출에도 힘든 상황에서 기술적인 투자나 고유목적사업비의 지출, 그밖에 매립지의 공원화에 대한 연구개발의 노력은 시도하기 어려운 일이 될 것이며 이는 장기적인 관점에서 오히려 비용을 증대시킬 우려가 있습니다.

법적인 테두리에서 재단이 보장받아야 하는 경비의 보전은 일반관리비이며, 또한 낙찰률도 보장을 받아야 공사원가에 대한 향후 절감 노력과 기술개발의 노력에 대한 공감대를 이룰 수 있을 것입니다.

## 2) 적정 위탁 사업비 규모(현 사업비 구조하)

### ① 재단의 위탁 사업비

(단위: 백만원)

사업명	정산방식 *도급 *실비	사업비			감독부서 구분			비고
		2019	2020	증감 (%)	공원 녹지	체육 시설	시설 관리	
1.녹색숲 조성관리 (공원녹지,양묘장, 야생화단지 개방)	도급 실비	2,727	3,129	녹/양3 개방33	3,129			공원녹지 1,133 (야생화단지 850) 양묘온실 566 야생화단지개방 1,430
2.제2매립장 수림대조성	도급	1,557	1,604	3	808		796	식재공사 808 수림대유지 796
3.드림파크문화행사 (꽃밭조성, 행사비등)	도급 실비	1,232	1,269	3	1,269			꽃밭조성 342 행사 927(769+158) 상생예산769/공사500
4.시민문화교실운영 (승마,지역근로자연찬회 등)	실비	230	230	0	230			승마30, 연찬회40 포함 상생예산 230
5.골프장 수목유지관리	도급	840	865	3			865	상생예산 865
6.골프장조경(보완식재)	도급	774	797	3		797		상생예산 797
7.간이체육시설 운영	실비	335	363	8		363		상생예산 363
<b>사무국 소 계</b>		<b>7,695</b> 27)	<b>8,257</b> 28)	<b>7</b>	<b>5,436</b>	<b>1,160</b>	<b>1,661</b>	<b>64%</b>
8.드림파크CC 코스관리	실비	4,175	4,389	5		4,389		상생예산 4,389
9.드림파크CC 코스보완	도급	300	300	0		300		상생예산 300
<b>코스단 소 계</b>		<b>4,475</b>	<b>4,689</b> 29)	<b>5</b>	<b>0</b>	<b>4,689</b>	<b>0</b>	<b>36%</b>
<b>합 계 (VAT포함)</b>	도:5,607 실:7,339	<b>12,170</b>	<b>12,946</b>	<b>6</b>	<b>5,436</b>	<b>5,849</b>	<b>1,661</b>	총상생예산 7,713 시환특 1,430 공사 3,803

2019년에 비해 평균 약 6% 인상한 2020년 사업비는 약 129.4억 원입니다.

다만, 도급사업은 실질적인 인상이 약 3% 수준이며, 실비정산 사업의 경우 신규사업과 함께 5%~8%까지의 다양한 증가율이 나타나고 있습니다.

비교 가능성을 위해 일부 사업예산은 제외한 수치이며 이에 대한 도급사업에 대한 각 사업별 도급원가와 이윤을 보면 수수료수익을 일률적으로 10%를 적용한 것이 나타납니다.

27) 비교 가능성을 위해 19년 캠핑장식재, 승마장예초비 등의 예산을 제외한 금액으로 19년 확정 승인예산과 차이가 있음

28) 전체 사업비 비중 64%

29) 전체 사업비 비중 36%



② 2019년 재단의 위탁사업의 공사원가 구성<sup>30)</sup>

(단위: 백만원)

구 분	공사 원가	위탁 수수료 (일반관리비 +이윤)	총 공사원가	폐기물/ 손해보험 료 등	공급 가액	VAT	총 위탁 사업비 31)
1.녹색숲	1,921	191	2,113	344	2,458	244	2,703
- 공원녹지	905	90	995	5	1,001	99	1,100
- 양묘관리	454	45	500	0	500	50	550
- 야생화단지 개방	562	56	618	339	957	95	1,053
2.제2매립장 수립대	1,282	128	1,410	5	1,416	141	1,557
3.드림파크 꽃밭 조성사업	274	27	301	0	302	30	332
4.가을나들이 행사	749	65	814	5	819	81	900
5.시민문화교실 운영관리	189	18	207	3	210	20	230
6.골프장 수목관리 사업	694	69	763	0	763	76	840
7.골프장 조경사업	635	63	698	5	703	70	774
8.간이체육시설 관리	268	26	294	10	304	30	335
9.골프장 코스 개선사업	226	47	273	0	273	27	300
10.드림파크CC 코스관리	3,450	345	3,795	0	3,795	379	4,175
합 계	9,688	979	10,668	372	11,043	1,098	12,146

공사원가의 경우 도급공사 원가와 실비정산 원가를 구분하지 않고 작성한 것으로 일부 사업의 공사원가는 기존의 구분과 차이가 있습니다.

향후 공익법인의 자산대비 최소 1% 사용의무라는 규정을 준수해야 하는 상황에서 위탁사업의 규모가 과거부터 진행해온 약 6~8%의 사업비 증가 규모는 외형상 적절해 보입니다.

다만, 사업 규모가 증가하면서 재단운영비의 증가도 예상되며 이를 상쇄할 조건이 되어야 함에도 현재와 같이 재단운영비에 대부분 수수료수익이 사용된다면 더 큰 규모의 증가나 도급공사에서 일반관리비를 보장하는 내용이 필요하다고 봅니다.

30) 백만원 이하의 금액의 차이로 합계 금액에 차이가 있으며 캠핑장 수목식재공사와 승마장 예초공사는 제외된 것입니다.

31) 백만원 이하의 금액의 차이로 인해 공급가액+VAT의 합계가 총위탁사업비의 합계와 차이가 있습니다.

### ③ 위·수탁 사업비 적정규모

공사 낙찰률의 1% 인상과 재단운영비의 보전에 관한 문제는 개별적으로 해결하기보다는 전체적인 문제를 원천적으로 해결하는 것이 타당합니다.

또한, 이는 재단의 ‘야생화개방 사업’에서 보듯이 다른 사업들과 비교우위에 있으며 효율적인 사업이 가능함을 수치로 보여주고 있습니다.

이제까지 서술한 내용을 요약하면 매립지공사의 다양한 사업을 다른 외주업체 공사로 돌릴 것이 아니라 재단의 위탁사업에 추가하여 계약한다면 충분히 위의 문제들을 해소할 사업 규모를 만들 수 있습니다.

우선 재단운영비의 적정 규모를 추정하여 전체적인 위탁사업비 규모를 도출하고자 합니다.

앞에서 서술한 ‘재단운영비 산출을 위한 비교’에서 지자체 문화재단의 일반관리비와 비교하여 향후 재단운영비가 약 20% 정도로 증가가 예상되고 이는 인건비 부대비용, 간접노무비, 자본적 지출 성격 비용 등의 지출이 꾸준히 증가할 것이 충분히 예측 가능합니다.

앞에서 서술한 총 위탁사업비의 4.68%로 법인세납부와 고유목적사업준비금 전입에 충당하여야 합니다.

그에 더하여 인건비성 부대 경비와 간접노무비, 물건비, 자본적 지출 성격의 비용들은 도급원가나 실비정산 원가에 포함되지 않아 재단운영비로 지출되어 재단의 재정에 상당한 압박이 됩니다.

따라서 현 사업구조 하에서 1단계로 2019년 말 상황을 정리하여 재단운영비의 규모를 산정하면, 위·수탁 사업비 대비 평균 적정 재단운영비 17%를 기준으로 볼 때 재단운영비는 약 20억 원 정도가 소요되며 이를 역산하면 약 140억 원의 위·수탁 사업비가 적정하다고 판단됩니다.

최대 2단계로 재단운영비로 20%를 가정한다면 재단운영비가 약 23억 원 소요되며 역산하여 약 165억 원의 위·수탁 사업비가 필요하다고 봅니다.

### 3) 재단의 수익 구조개선 필요성

#### ① 기본재산과 보통재산의 조정

재단의 기본재산은 약 6억 원이며, 이는 다른 기초단체 문화재단의 예를 보면 상당히 많은 금액임을 알 수 있습니다.

다른 기초단체 문화재단의 경우 기본재산보다는 보통재산을 더 많이 관리하는 것이 나타나며 이는 자금의 융통성 있는 관리를 위한 불가분의 조치라고 보입니다.

보통재산의 경우 일정한 절차(이사회 결의 등)만 거치면 큰 어려움 없이 사용이 가능한 구조로 되어 있어 일시적인 자금의 어려움을 해결하는 데 유용하게 사용됩니다.

따라서, 너무 경직된 자금구조보다는 실질적인 재단의 자금운영에 도움이 되는 방향으로 기본재산과 보통재산의 조정이 필요하다고 보입니다.

#### ② 낙찰률의 환원

구 분	낙찰률(입찰에 준함)	증감률(%)	비 고
2014년	87.5 ~ 86.5%	-	별도 인센티브 30%
2015년 ~ 2017년	87.5 ~ 86.5%	-	단위 사업별 기준
2018년	85.5%	-2 ~ -1%	사업비 통합 기준
2019년	84.5%	-1%	사업비 통합 기준

2018년 대비 2019년 낙찰률이 하락한 요인이 재단의 공사원가 절감에 따른 수익이 일정액 보장된 상태의 조정이 아닌 외부의 요인에 의한 것으로, 실질적인 수익이 보장되지 않는 지나친 원가 부담은 결국 재단의 재정 부담으로 작용하며 고유목적사업을 원활하게 하는 본래의 의도와 다르게 위탁사업만을 위해 한정되는 역할에 그칠 것입니다.

따라서 외부적인 이유도 있겠지만, 향후 매립지공사와 재단의 계약에 대해 사업비 통합 기준으로 최소 85.5%의 낙찰률로 환원하는 것이 타당합니다.

(단위:천원)

구 분	2018년(기존 낙찰률: 85.5% 유지)		2019년(낙찰률 85.5%-->84.5%)	
	낙찰률 유지 (85.5%)	낙찰률 유지	낙찰률 유지 (85.5%)	낙찰률 하락 (84.5%)
매출액	9,445,478	9,445,478	11,031,781	10,921,464
낙찰률 차이 <sup>32)</sup>	0	0	0	(-110,317)
도급원가	8,018,573	8,018,573	8,359,610	8,359,610
매출총이익	1,426,904	1,426,905	2,672,171	2,561,854
재단운영비	1,675,310	1,675,310	1,650,678	1,650,678
- 인건비 <sup>33)</sup>	1,281,882	1,281,882	1,062,600	1,062,600
- 기타비용 <sup>34)</sup>	393,428	393,428	588,078	588,078
영업이익	- 248,405	- 248,405	1,021,493	911,176
영업외수익	85,452	85,452	95,191	95,191
영업외비용 <sup>35)</sup>	32,687	32,687	650,769	650,769
법인세차감전 당기순이익	- 195,640	- 195,640	576,532	355,598

낙찰률 차이로 인한 2019년 변경된 이익의 감소액은 사업수익의 1%에 상당하는 약 1.1억 원입니다.

고유목적사업비의 사용을 고려하면 낙찰률의 환원이 재단운영비의 운용에 상당히 이바지할 것입니다.

재단운영비의 경우 위탁사업비 대비 일정 비율로 운영할 수 있으며 이는 매출액(사업비) 규모가 수수료수익으로 재단운영비와 고유목적사업비의 지출을 합한 규모를 충족하는 정도가 되었을 때 적정한 것으로 보입니다.

아울러 최근 4개년 재단의 도급원가는 꾸준히 증가추세이며, 이는 사업 규모에 따른 증가와 인건비 등의 인상도 요인입니다.

공무원가 이외에도 아래와 같은 재단운영비의 증가도 동일한 요인으로 작용합니다.

32) 낙찰률 차이에 의한 수익 감소는 손익이 아닌 사업비에 대한 수수료수익의 감소분으로 표시함

33) 손익계산서상의 급여, 수당, 퇴직급여, 복리후생비 포함

34) 손익계산서상의 관관비(일반관리비) 내용에서 인건비를 제외한 나머지 금액의 합계

35) 고유목적사업준비금을 적립하여 비용처리하며 이는 조정 후 금액은 편익상 영업이익의 50%로 반영함

구 분	2016년		2017년		2018년		2019년	
매출액	8,849,594	100%	9,450,675	100%	9,445,478	100%	11,031,781	100%
공사원가	6,794,348	76.77%	7,696,740	81.44%	8,018,573	84.89%	8,359,610	75.78%
매출총이익	2,055,154	23.23%	1,753,935	18.56%	1,426,904	15.11%	2,672,171	24.22%
재단운영비	1,304,044	14.73%	1,397,700	14.78%	1,675,310	17.73%	1,650,678	14.96%

재단운영비의 경우 매출액 대비 거의 15%대에 묶여 있는 상태이고 2018년은 예외적인 상황으로 17%로 나타나며 이는 위·수탁계약이 2017년에 비해 증가하지 못한 상황에서 나타난 일시적인 현상으로 판단됩니다.

### ③ 추가 사업비 수익구조 개선

주민근로자의 중식비가 약 1억 원의 예산이 지출되는 상황에서 이제까지 이를 사업비에 반영하지 못하는 재단의 운영비 중 주민참여가 불가피한 비용은 보전받는 것이 타당하다 할 것입니다.

만약 이에 대한 금액이 사업비에 포함되어 재단운영비의 부담이 줄어든다면 재단의 경우 부가가치세와 법인세의 부담이 증가하지만, 고유목적사업비에 지출하는 부분이 확대되어 문화재단으로서의 명분과 함께 재정의 안정적인 기반이 마련되고 매립지공사와의 계약과 정산과정에서도 원칙적인 틀을 정하고 나면 다툼의 여지가 없어질 것입니다.

### ④ 사업비 증대의 필요성

현재 매립지공사의 예산 부족으로 수목 생육관리가 이루어지지 못하여 간벌, 고사목 제거, 덩굴 제거, 병충해 방제 등이 시행되지 못하였고 2019년 태풍 링링으로 인한 주민체육공원 주변 수목 다수가 ‘간벌 미시행’으로 전도, 전선 등 연쇄 사고로 이어진 점을 고려하여야 할 것입니다.

또한, 주민체육공원 수목관리, 해안 도로변 외곽차폐 수림대유지 관리, 3-1 매립장 단벌 식재공사, 안암호 주변 녹지관리 및 외곽 순찰 등 사후관리 대상 시설 유지 관리에 외주업체 선정보다는 재단에 위탁하는 것이 오히려 장기적인 유지 관리에 효과적일 것입니다.

따라서, 시대적인 요구와 환경의 변화로 인해 경직된 계약이 아닌 기존의 설립목적에 적합하고 세법상 공익법인의 제대로 된 역할을 할 수 있는 재정적 필요가 요구되며, 이를 계약에 반영하여 고유목적사업과 본래의 사업을 진행할 수 있도록 재정적인 보완이 필요합니다.

## 5. 향후 개선과제 및 제언

### 1) 재단의 정체성과 관련된 개선과제

지역문화재단의 운영에는 어려움이 존재합니다.

우선 모호한 역할에 대한 분명한 존재의의를 갖는 것이 필요합니다.<sup>36)</sup>

기초단체의 문화재단과의 관계설정, 매립지공사와 연계된 사업 등의 다양한 역할을 하기에는 아직 빈약한 재정이 문제이지만 문화재단이라는 존재감이 있는 분명한 의식이 재단의 구성원에 존재해야 합니다.

재단의 원가절감 노력과 함께 도급계약으로의 전환 또는 고유목적사업비의 자산대비 1% 지출의무 규정에 따른 계획적이고 지속적인 관리를 통해 존재감을 드러내는 목적사업을 발굴하고 실행하는 것이 필수적입니다.

또한, 이제까지 주장한 재정의 자율성과 건전성에 대한 조치들을 통해 요구되는 사업비의 현실화를 위해서는 일부 위탁사업을 전체적인 도급공사로 전환하는 것과 그런 상황이 어렵다면 현재 외주사업으로 진행하는 해안 도로변 외곽차폐 수림대 유지 관리, 3-1 매립장 단별 식재공사, 안암호 주변 녹지관리사업 등을 위탁사업으로 전환할 수 있도록 요청하여 규모를 증가시키는 것입니다.

이를 위해 더욱 매립지공사와 협력이 필요합니다.

매립지 유희부지 또는 이주 보상지를 활용하여 수목, 초화, 잔디 등을 생산해 주변 지역 유관단체와 협업을 통한 수입창출 등의 사업을 추진하기 위해서는 법적인 문제로 지적되었던 환경부 미승인 사업의 승인 추진과 신규사업 발굴을 통한 자생력을 높이는 노력으로 요구되며 매립지에 대한 전체적인 사업을 긍정적인 이미지로 바꾸는 사업이 다양하게 시도되는 것으로 나타날 것입니다.

---

36) 지역문화재단 운영의 쟁점 및 과제/배관표/국회입법조사처/2019.12.31.

다만, 아직 넘어야 할 문제가 많으며 이를 위해서는 매년 계약의 과정에서 사업비 결정의 어려움과 문화재단의 역할에 대한 고민을 지속하여 매립지 주민들에게 진정성과 적합성에 맞는 공익사업을 추구해야 하는 과제가 남는 것으로 이것은 분명한 한계로 남게 될 것입니다.

## 2) 지역주민에 대한 공익적 활동 필요성

기업의 사회적 책임에 대한 논의와 효과에 대해 사회의 인식이 변화하고 있는 시점입니다.

매립지공사와 재단의 역할은 단순히 쓰레기매립장의 관리만이 아닌 매립지의 환경과 주민들의 문화적 욕구를 충족하여 매립지의 부정적 이미지를 불식시키고 긍정적인 이미지와 다양한 주민들의 요구를 사전에 수용하여 안정적인 환경 조성사업으로의 전환을 기대할 수 있을 것입니다.

‘숲 나눔 프로젝트’, ‘시민참여 숲’ 이나 ‘어린이 체험캠프나 자연 학습장’ 또는 문화공간으로 활용하는 등의 주민참여 활동을 계획하고 실행하는 노력이 필요하다 할 것입니다.

이러한 활동을 CSR활동<sup>37)</sup>으로 규정하면서 민간 및 공기업도 이런 활동을 증대하고 있습니다.

예를 들자면, ‘공기업의 CSR활동과 사회적 신뢰와의 관계분석’<sup>38)</sup>(임성환, 박병식)에서는 한국수력원자력에서 원자력발전소 주변 지역주민을 대상으로 한 다양한 봉사활동과 사업자지원사업이 있었지만, CSR활동이 진정성이 있고 지역사회 구성원에게 적합하다는 자각이 있어야 효과가 있다는 발표하고 있습니다.

따라서, 재단도 매립지공사와 함께 이러한 활동을 연계할 필요가 있으며 재정적인 자율성이 주어진다면 주민들의 요구가 무엇인지 진정성 있는 모

37) 기업의 사회적 책임활동을 지칭함(Corporate Social Responsibility: CRS)

38) 공기업의 CSR활동과 사회적 신뢰와의 관계분석/임성환, 박병식/지방정부연구21/2018



습으로 접근하고 이를 통해 향후 다양한 사업에 주민들의 동참을 요청할 수 있는 근거가 될 것입니다.

재정적인 자율성이 없다면 시도하기 어렵지만, 현재의 수익구조보다 재정적인 자립과 자율성이 주어진다면 이를 통해 지역주민들에게 필요한 지원 사업과 문화사업을 통해 설립 시 목표를 이루어갈 토대가 마련될 것입니다.

## [ 참고자료 및 첨부자료 ]

- 지역문화재단 운영의 쟁점 및 과제/배관표/국회입법조사처/2019.12.31.
- 지역문화재단의 역할과 과제/이현식/황해문화49/2005.12/새얼문화재단
- 드림파크문화재단 결산서 2017년~2019년 자료 요약
- 지역문화재단 운영의 쟁점 및 과제/배관표/국회입법조사처/2019.12.31.
- 한국조경학회지 48권 제3호 /고하정/(재)숲과나눔 박사후연구원/2020.06
- 공기업의 CSR활동과 사회적 신뢰와의 관계분석/임성환,박병식/지방정부연구21/2018
- 조직 직무분석 결과보고/드림파크문화재단/2013.12.
- 국세청 공익법인 공시자료
- 「드림파크 조성 관련 위탁사업」에 대한 예정원가조사보고서(2009.08.26./한국물가협회)